

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재공고(변경공고)

2026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방형직위(보건소장)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9일

인천광역시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

임용 직위	임용직급	임용 기간	임용 인원	주요 업무 내용
보건소장	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(개방형4호)	2년	1명	○ 지역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·집행 및 평가 ○ 감염병의 예방·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○ 보건교육, 구강건강,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○ 모자보건, 재활보건, 금연지도에 관한 사항 ○ 노인보건, 정신보건, 치매에 관한 사항 및 각종 방문보건 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○ 예방접종 업무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 ○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 ○ 응급의료 및 마약류 등의 관리와 의료기관, 약국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○ 기타 보건의료 향상·증진 및 연구에 관한 사항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-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-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(보건소장)

3. 임용신분

-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-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별정직공무원 등은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, 임용기간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 등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신분 유지

4. 응시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 ※ 최종 임용일 기준

- 성별 · 주소지 · 연령 : 18세 이상 (2008.12.31.이전 출생자)
 - *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나. 응시자격요건 *필수요건 응시자격 확대

-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,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

구 분		자 격 요 건
필수요건		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-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 및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 -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의무·약무·간호·보건진료 직렬의 현직 공무원
경력요건	학 력 기 준	<석사학위 이하인 자>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<u>관련분야</u>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<박사학위 소지자>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<u>관련분야</u>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※ 관련학과 학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
	자격증 기 준	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사 면허 소지 후 <u>관련분야</u>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공무원 경 력 기 준	④ <u>관련분야</u>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<u>관련분야</u>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민 간 경 력 기 준	⑥ <u>관련분야</u>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<u>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</u>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※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,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

□ **관련학과 : 의학, 보건 등 임용예정 업무 관련 학과**

□ **관련분야 : 의무·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약무·간호·보건진료 분야**

(공무원 경력의 경우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)

- 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.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- ※ 경력의 계산,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※ 전임근무(1일 8시간)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(예시: 주20시간 근무)되어야 하며,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

5. 시험방법

○ 1차 서류전형(형식요건심사)

-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

○ 2차 면접시험(적격성 심사)

- 형식요건 심사(1차 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
-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 능력, 조직관리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

6. 시험 일정

구 분	세 부 일 정	비 고
응시원서 접수	2026. 10. 27.(화) ~ 10. 30.(금)	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11. 13.(금) 한	
2차 면접시험	2026. 11. 16.(월) ~ 11. 27.(금) 중 1일	
임용후보자 발표	2026. 12월 중 예정	
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험 장소 공고, 임용후보자 발표는 부평구 홈페이지(www.icbp.go.kr) > 소통과 참여 > 채용공고 > 임기제&신규공무원 채용공고에 게시
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,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6. 10. 27.(화) ~ 10. 30.(금) (4일간) (09:00~18:00)

나. 접수방법 *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○ 방문접수 :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(부평구청 5층)

(접수시간) 09:00 ~ 18:00 *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* 부평구 수입증지는 1층 하나로민원과에서 부착 (응시수수료 개방형 4호 10,000원)

○ 등기우편 접수

(접수인정)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

*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

*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 불가, **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30) 유의**

(주 소)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(부평동),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

*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(☎032-509-6136)

7. 제출 서류

연번	서류항목	비고
1	응시원서 1부 * (방문접수) 부평구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 제출 * (우편접수) 응시수수료 또는 우편통상환 동봉 (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)	서식 1
2	이력서 1부 *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으로 작성 *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미인정)	서식 2
3	자기소개서 1부 * A4용지 2매 내외, 경력중심으로 작성	서식 3
4	직무수행계획서 1부 * A4용지 7매 내외, 요약서 2매 이내 * 자유롭게 기술하되,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정책(사업)목표, 추진전략·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	서식 4
5	해당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1부 *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*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,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* 근무기간, 부서, 직책,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*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의 성명, 연락처, 날인(서명)이 있어야 함 *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임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* 비상근,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*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·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.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	서식 5

	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공적으로 경력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에 근무하였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*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*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본 첨부	
6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(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 *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"보험가입 전체기간" 발급 *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추가증빙서류(급여내역서 등) 제출 *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발급) 제출	-
7	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	서식 6
8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	서식 7
9	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*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	자격 증빙에 필요한 경우 제출
10	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* 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(확인),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	
11	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(수상실적, 연구실적, 논문 등)	

*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보수 및 복무

□ 보 수

-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
-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13, 개방형 4호 등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·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협의를 거쳐 책정

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한계액】

(단위 : 천원)

연봉등급	상 한 액	하 한 액
4호	-	70,490

- 기타 수당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개방형(임기제) 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

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제1항)

□ 복 무

- 임용기간 : 2년 (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)
-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 의함.

9. 응시자 유의사항

-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보완서류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응시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(또는 임용)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서류 상 기재착오·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자가 없거나 부평구 소속 공무원만 응시한 경우 또는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, 외부 응시자가 1명 이하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(지방공무원법 제56조)
 -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

못하며,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·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본 시험계획 및 면접시험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총무과 인사팀(☎ 032-509-613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